

외국인 투자 및 기업에 대한 북한의 법률과 규제

김홍철 대표변호사·신은혜 변호사 법무법인 호산

북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풍계리 핵실험 강 폭발 이후 북미 양국의 '비핵화' 해석을 둘러싼 갈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대북제재 해제와 이에 따른 투자 가능성에 관한 기대는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장밋빛 기류 덕분에 계속되고 있다.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 전인 2015년 기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이 5억6,330만 달러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무용한 관심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현실적인 대북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제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 및 해외 기업들이 미리 눈여겨볼 만한 새로운 기회임은 분명하다.

북한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과거 활동은 주로 개성공업지구, 라선경제무역지대 등과 같은 특정 경제특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향후 북한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면 경제특구 외의 지역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장 개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한 전역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점이다. '스타벅스 평양 1호점', '맥도널드 평양점'의 등장이 기다려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추후 북한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 활동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북한의 법률과 규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적이고 지도부의 결정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아 접근이 쉽지 않지만, 북한에도 성문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기 전 판단을 돕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한국기업

한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에는 외국기업과 달리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한국과 북한의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남북 교류 행위와 협력사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남북교류협력법상 규제는 크게 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승인 또는 신고를 통한 포괄적 규제, 물품 등의 반출·반입 즉 교역에 대한 규제, 방문과 접촉 등 인적 교류에 대한 규제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 또는 기업 설립 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승인 대상이 되는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보건 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¹. 그중 위의 법 및 통일부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은 남북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등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을 합영, 합작, 단독으로 투자하는 행위이다²(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³.

따라서 한국기업이 북한에서 북측과의 합영·합작 형태로, 또는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할 경우 위 법에 따라 사전에 남북교류협력 시스템(<http://www.tongtong.go.kr/>)을 통해 통일부 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⁴.

한국기업이 출자한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사전승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통일부는 원칙적으로 ‘남한 주민이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제3국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제3국 법인이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남한 주민이 투자한 외국기업이 북한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남한 주민이 외국기업을 주도적으로 설립해 그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는 등 실질적 측면에서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⁵.

그러나 경영권 및 의사결정권을 장악했다거나 실질적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현실적 규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⁶

북한은 남북경협에 관해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1182호)으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이하 북남경제협력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기존에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개별특수경제지역에 관한 법과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위 특수경제지역들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북남경제협력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⁷

한편 북한의 법령은 ‘다른 나라’, ‘외국인’, ‘남측 동포’를 구분해 사용하는데, 기존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던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에서는 남한 투자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점, 각 법의 제정 취지가 다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위 외국인 투자 관련 법들과 북남경제협력법은 대등한 위치의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⁸ 이에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시 북남경제협력법이 적용되겠지만, 해당 법의 하부 규정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투자 관련 법들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9, 56면

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하기로 하는 행위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 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채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상대방 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통일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경제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포괄적 사업권을 취득한 자와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나.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다.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행위
 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4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 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 기술, 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 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 4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5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09, 62~63면

6 박성철,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 <법학평론 제5권>, 2015. 2., 210~237면

7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6, 25면

8 위의 책, 30~31면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려는 한국 법인 및 개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북남경제협력법 제2조·제3조·제10조).⁹ 북한의 기존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인 외국인투자법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등 북한 지역에서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를 규정하고 관련 시행규정에서 외국인의 출자비율, 운영방식, 이윤분배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남경제협력법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¹⁰

외국인투자기업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북한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을 들여오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하고 북한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을 ‘외국투자가’로 칭한다. ‘외국투자가’ 중 기업투자가는 ‘외국투자기업’

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북한에 창설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일컫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인 ‘외국기업’이 포함된다(외국인투자법 제2조).¹¹ 북한에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어 북한의 법인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법 제14조)¹²에 관한 규제를 유념해야 한다.

합작기업은 북한의 투자자와 외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 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외국 측의 출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은 북한 측 투자자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투자한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북한은 외국인투자자에게 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단독기업 형태의 직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다.¹³ 위 각 설립 방식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업

9 제2조(정의)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 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북남경제협력의 승인)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승인 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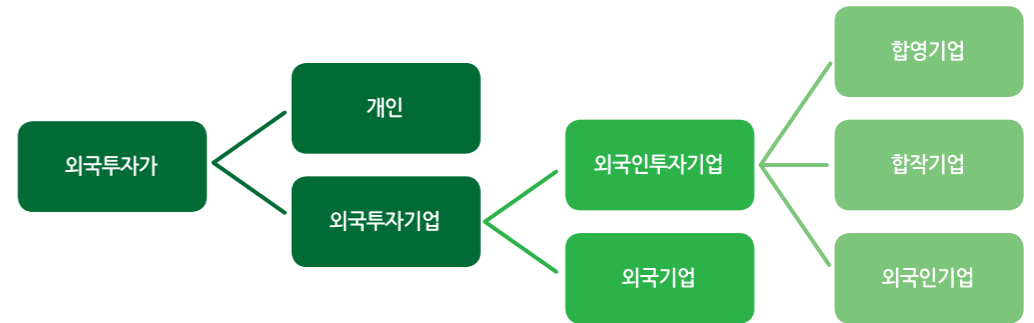
10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6, 46면

11 외국인투자법 제2조(용어의 정의)
1. 외국인투자란 외국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을 들여오는 것이다.
2. 외국투자가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
3. 외국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우리나라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
5. 합작기업이란 우리 측 투자자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 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6. 합영기업이란 우리 측 투자자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7. 외국인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8. 외국인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9. 외국투자은행이란 우리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10.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12 제14조(법인자격대상)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13 정영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7, 27면

그림 1. 외국인투자법상 외국투자가의 분류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의 위치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개별특수경제지역에 관한 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6조). 특히 북한은 첨단 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데(외국인투자법 제6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조건,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법 제8조).

그러나 북한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을 저해하는 대상, 자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환경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거나 제한된다(외국인투자법 제11조).

기업 청산에 관한 규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개성공업지구법 등 개별특수경제지역 관련 법률과 그 하위 규범들은 각 지역에서의 기업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 한국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법률인 북남경제협력법은 기업의 청산 절차에 관한 구체적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절차는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이 제정되기 전 북한 당국은 금강산·개성 지역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려는 남한투자자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적용했으므로¹⁴, 한국기업의 청산과 관련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제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은 임의에 의한 청산일 경우 기업의 형태에 따라 각각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

14 법무부, <북한 북남경제협력법 분석>, 2006, 30~31면

기업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강제청산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이 적용된다.¹⁵

대표적으로 외국인기업법을 살펴보면 외국인기업은 경영 기간이 만료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영 계속이 곤란한 경우, 회복 불가능한 경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판소의 파산 판결이 있는 경우, 법규 위반으로 기업 해산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제73조). 외국인기업은 ①지역관리기관에 해산 신청, ②중앙관리기관의 해산승인 결정, ③해산 기업의 공고 및 채권채무자에게 통지, ④청산위원회의 명단제출과 승인 및 조직, ⑤청산위원회의 청산업무 개시, ⑥청산업무 완료의 순서로 청산하게 된다. 합작법, 합병법 및 개별특수경제지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에서도 거의 흡사한 절차를 두고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 내의 기업정리 방안에 대하여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과 기업재정규정 시행세칙에서 보다 자세한 요건 및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규정상 기업정리 방안은 크게 ①주식양수도, ②사업양수도, ③청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 청산은 위에서 살펴본 외국인기업법상의 절차와 거의 흡사하므로 주식양수도 및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기업 정리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기업 정리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분율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권과 경영권을 소유하는 주식양수도와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준칙과 기업재정규정 시행세칙에서 그 요건 및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¹⁶ 위 각 하위 규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주식양도 시 이사회 등의 승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¹⁷ 그러나 관련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거래 시 행정 절차에 따른 지연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기업 정리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사업양수도는 개성공업지구 창설·운영준칙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영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며 그 외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다(창설·운영준칙 제99조).¹⁹⁻²⁰ 그 밖에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 진행하는



내부 구조 조정 작업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기업의 회생·파산과 관련한 북한의 규정이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 투자 시점의 전문가 조언 필요

북한의 기업 관련 법률들은 그 표현이 단순하고 규제의 상당 부분을 행정 당국의 재량이나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라선·개성공업지구, 황금평 등 특수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과 그에 따른 규정, 세칙, 합의서 등이 상시 변화하므로 구체적인 투자 시점에 적용되는 법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대북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긴급비상조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의 적들에 대한 통합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등에 따른 대북제재 및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의한 국제적 대북제재의 현실적 해제가 있어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므로 투자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확실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Contact
 김홍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호산
 02-6138-6738
 hongckim@hosanlaw.com



Contact
 신은혜 변호사
 법무법인 호산
 02-6138-6719
 eunshin@hosanlaw.com

15 경영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남북법제개선 연구·고서>, 법제저, 2007, 35면

16 대주회법안, ‘개성공단 기업인수 및 매각절차에 대한 연구용역보고’, 2010, 14-17~18면

17 창설·운영준칙 제46조[주식의 양도]
 ①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기업재정규정 시행세칙(안) 제62조 [주식양도에 관한 권리]
 기업의 주식 보유자들은 주식을 양도하려 할 경우 출자가 총회 또는 리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출자가 총회 또는 리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18 대주회법안, ‘개성공단 기업인수 및 매각절차에 대한 연구용역보고’, 2010, 18-19면

19 창설·운영준칙 제99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기업이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15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0 위의 책, 14~15·20면